위험물안전관리법 (약칭: 위험물관리법)

[시행 2024. 7. 4.] [법률 제19161호, 2023. 1. 3., 일부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제1장 총칙

| 이 법은 위험물의 | | 및 | 과(| | | |
|-----------|--------|-------|--|----------------|---------------------|-----------|
| 이에 따른 | 에 관한 사 | 항을 규 | - ^L 정함으로써 (<mark>영</mark> | l업규제, 사람 | 발건강규제, [;] | 자연환경규제 X) |
| 위험물로 인한 | 하0 | Ħ | | | | |
| 을 확보 | 함을 목적의 | 으로 한다 | 다.(<mark>사회질서유</mark> 지 | (X X) | | |

제2조(정의)

제1조(목적)

① 용어정의

| 1. 위험물 | 또는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으로 정하는 물품 |
|---------|---|
|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으로 정하는 수량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의 기준이 되는 수량 |
| 3. 제조소 | 위험물을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
| 4.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규정(6조 1항)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
| 5.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규정(6조 1항)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
| 6. 제조소등 |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기준 은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 3조 | (적용저 | [오] |) |
|---|----|------|-----|---|
| | | | | |

이 법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 4. 전문인력 양성
 -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 지정수량 | 인 위험물의 | 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 로 정한디 |
|------|--------|---------------|-------|
| | | | |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나 제조소 등에서 취급해야 한다
- ②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 1 | 1. 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의 기간동안 | |
|---|--|--|
| | 하는 경우 | |
| 2 | 2. 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으로 하는 경우 | |
| - | -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은 시·도조례 | |

-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28~48조)으로 정한다.
-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각 위험물의 수량 ÷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 = 1 이상인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행안무령 | 시성수량 300kg, | 행안무령 위험물의 시성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성하는 것!! | |
|------|-------------|--------------------------------|--|
| | | | |

| 제1류 | 제3류 | 제5류(200kg) | 제6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 화약류 염소질산, 유철금마, 질산에스테르 니트로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 위험등급 | 지정수량 | 품명 | 종류 | 주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_ , |
| | | | | |
| | | | | |
| | | | | ラフスロ マガスロ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 지정수량 | 품명 | 주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 | 지정수량 품명 |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 위험등급 | 지정수량 | 품명 | 종류 | 주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 위험등급 | 지정수량 | 품명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충격주의

| 위험등급 | 지정수량 | 품명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가연물접촉주의

| 위험등급 | 지정수량 | 품명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2조 위험물 |
|---|
| 1. 산화성고체 |
| 고체 |
| 액체 -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 |
| 기체 -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 |
| 또는 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
|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액상판정시험 |
| |
| 1. 시마 |
| 2. 이교 그는 · 이 · · · · · · · · · · · · · · · |
| |
| 이동시간 : |
| |
| 2. 가연성고체 |
| · 고체로서 또는 물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경 |
| 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 유황 순도가 |
| 철분 철의 분말로서 의 표준체를 통과 하는 것이 인 것은 <mark>제외</mark> |
| 의의 금속의 분말 |
| 금속분 및 의 체를 통과 하는 것이 인 것은 제외 |
| 1. 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mark>제외</mark> |
| 마그네슘 1 |
| 인화성고체 그 밖에 1기압 에서 인화점이 섭씨 인 고체 |
| |
|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 고체 또는 액체로서 이 있거나 하는 위험 |
| 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 |
| 4. 인화성액체 |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로서 이 있는 것을 말한다. |
| ※ 인화성액체 <mark>제외</mark> 기준 |
| 기 가 화장품,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나. <mark>의약외품(알코올류 제외</mark>) 중 수용성 인 인화성액체를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안전확인대상 <mark>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 제외</mark>) 중 수용성 인 인화성액체를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
| [의 : 한민국한테이 징글지국제점(글고글ㅠ 제되) 중 무용용 한 한외중국제글 |
|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
| 제2석유류 |
| 제3석유류 도료류 그 밖의 <u>물품은</u> |
| 제4석유류 가연성 액체량이 이하인 것 제외 |
| 동식물유류 내장용기등 최대용적이 이하 인 것은 용기의 외부에 화기엄금과 동일한 표시할 수 있음 |

| - 석유류 취급기 | | | |
|--|---|--|--|
| | 이황화탄소 | | |
|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티르 | | |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 | |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 | |
|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 | |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 | |
| 동식물유류 | | | |
| ; ; | 1. 1분자 구성하는 탄소원자 수가 <u>까지</u> 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 | | |
| i ! | 2. 제외 대상 이상 이어야 함! / 부틸 X | | |
| | 가 알코올의 함유량 이 미만 인 수용액 | | |
| 알코올류 | 나 가연성액체량이 미만이고 | | |
| ! |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이 | | |
| ! |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i5. 자기반응성물 | NI | | |
| ĺ | | | |
| 고체 또는 액체의 | | | |
| 타내는 것을 말한 03311118 | | | |
| ! |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 하는 <mark>제외</mark> 할 수 있는 것 | | |
| ! ' ' | 55 지크밀14비스 40 | | |
| ! | 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미만인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 |
| ! | 들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 |
| i I | 가. 과산화벤조일 의 함유량이 <mark>미만인 <u>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u></mark> | | |
| 다. 과산화지크 | | | |
| <u> 라. 1·4비스(2-</u> | 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미만인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 |
| i i | | | |
| 6. 산화성액체 | | | |
| 액체 로서 | 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 |
| 과산화수소 - | 농도가 이상 | | |
| 질산 | 비중이 이상 | | |
| | | | |
| 7. 복수성상물품(뒤쪽 으로 지정수량 정한다) | | | |
|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 속하는 품명(하나의 물질이 두가지의 위험성) | | | |
| ! : 기. 1류 + 2류 | = 제8호(지정수량) | | |
| ; 나. 1류 + 5류 | | | |
| 다. 2류 + 3류 | | | |
| 라. 3류 + 4류 | | | |
| -1. 3H + 1H 마. 4류 + 5류 | | | |
| : <u> </u> | | | |
| : 8 의허무이 파격 | 또느 지저스랴 결제에 필요하 신허은 시시하 스 이느 기과 | | |
| 8.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 결정에 필요한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1.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 | | |
| | | | |
| 2. 소방청장 이 지정하는 기관 | | | |

시행규칙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

| 1. 일반적인 탱크 | 탱크 내용적 - 공간용적(<mark>당해 취급용적 X</mark>) |
|---------------------------|---|
| 2. 차량에 고정된탱크(이동저장탱크) | 최대적재량 이하(차량중량 이하 X) |
| 2 계조사이바치그사이 투스그조서비 이용태그 | 탱크 내용적 - 공간용적이 최대적재량 이하인 경우 |
| 3. 제조소·일반취급소의 특수구조설비 이용탱크 | 당해 최대량 |

②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
| 원료(위험물, 비위험물) -> 제조품(<mark>위험물</mark>) | 원료(위험물) -> 제조품(비위험물) |

시행령제4조(저장소)

| 저장소의 구분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
|-----------------|--|
| 1. 옥내저장소 | 지붕, 기둥, 벽등에 의해 둘러싸인 옥내 에 저장하는 장소 |
| | 옥내탱크저장소 제외 |
| 2.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 2. 7464/164 | (지하탱크, 이동탱크, 암반탱크 제외) |
| 3.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 4.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 5.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 |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 | - 피견인자동차 요건 |
| 6. 이동탱크저장소 | 1. <mark>앞</mark> 차축 없는 것 |
| | 2.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 가 견인자동차에 적재 되고 |
| | 3. 당해 피견인자동차 와 그 적재물 중량 의 상당부분 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 되는 구조 |
| | 옥외에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mark>옥외탱크저장소 제외</mark>). |
| | 2유인 4 <mark>특제</mark> 6 24시도조례 해사기구 |
| | 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인화점 0도 이상 인 것에 한한다) |
| 7 90174744 |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 0도 이상, 톨루엔, 피리딘) |
| 7. 옥외저장소 |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 | 다. 제6류 위험물 |
| |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시·도조례 에서 정하는 위험물 |
| | 마.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
| 8.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 옥외저장탱크 종류(시행규칙 제6조 7,8)

| カスポコ | 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 |
|--------------|--|
| <u>지중</u> 탱크 | 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 |
| 해상 탱크 | 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 |

시행령제5조(취급소) 주판이일

| 취급소의 구분 |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
|----------|---|
|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 1. 자동차 등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2. 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 포함 고정된 급유설비 1. 용기에 옮겨 담거나 2.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하 탱크(이동저장탱크)에 주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 제외) |
| 2.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1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 소화난이도등급 Ⅲ - 2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40배 이하, 소화난이도등급 Ⅱ |
| 3.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음 장소 제외 가.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 제외)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만 있고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4류 위험물-1석유류 -> 배관의 안지름이 30센티미터 미만)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 마목에 의한 경우 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 이송 |
| 4. 일반취급소 |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소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

시행규칙 제2조(정의)

1. 도로 :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

2. 불연재료 : 불연재료 중 <mark>유리 외의 것</mark>

.....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① <u>제조소등을 설치</u>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u>허가</u>를 받아야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조소등의 <u>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u>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u>품명·수량 또</u> <u>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u>1일 전</u>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u>허가를 받지 아니하고</u> 당해 <u>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u>할 수 있으며, <u>신고를 하지 아니하고</u> 위험물의 <u>품명</u>·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2.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허가 받아야한다 / 신고해야 한다 X

-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u>협의하여야 한다.</u>
- ② 군부대의 장이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군부대의 장은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실시할 수 있다. 완공검사를 자체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안부령(11조)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 기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11조2(군용위험물시설 설치등 관련 서류)

- 1.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정기검사계획 X
-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
- 3. 완공검사 결과
- 4.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 5. 예방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7. 13.〉

<u>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u>(제8조 관련)

| 제조소등의 구 분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기동・바닥・보 또는 지붕을 <u>증설</u> 또는 철거(보수 X)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증설 X)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출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출 또는 맨홀의 지름이 <u>250mm</u> 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u>300m</u> (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XII제3호다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XII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XII제4호다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XII제4호다목에 따른 당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XII제4호라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병과 4 XII제4호라목에 따른 온도 및 동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설비・소화약제탱크・포해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2. 옥내 저장소 |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다.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바.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 다. 별표 6 II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교체 · 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바. 별표 6 VI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 는 경우에 하하다)
-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
- 카.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3. 옥외탱크 저장소

- 타.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 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애뉼러 판을 포함한다)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조·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 거. 별표 6 XI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너. 별표 6 XI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더, 별표 6 XI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 하는 경우
- 러. 별표 6 XI제3호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 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 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옥내탱크

저장소

- 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교체 · 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
- 사.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자. 별표 7 II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냉각장치·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 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5. 지하탱크 저장소 | 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자. 별표 8 IV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
| 6. 간이탱크 저장소 |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u>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u> 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7. <u>이동탱크</u> 저장소 (<mark>증설 X</mark>) |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위치 X)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 11 11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8. 옥외 저장소 다.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 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다. 배수시설 · 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9. 암반탱크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저장소 교체 · 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 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 · 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 에 하하다)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10. 주유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 취급소 에 하하다)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아. 별표 13 V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자. 별표 13 XVI에 따른 개질장치(改質裝置: 탄화수소의 구조를 변화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 는 조작 장치), 압축기(壓縮機), 충전설비, 축압기(압력흡수저장장치) 또는 수입설비(受入設備) 를 신설하는 경우

| | 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타.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파.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하.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
|---------------|---|
| 11. 판매 취급소 |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12. 이송 취급소 |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누설확산방지조치ㆍ운전상태의 감시장치ㆍ안전제어장치ㆍ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마. 주입구ㆍ배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바.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8조)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 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9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8조)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12~18조)으로 정한다.

| 일반 | 허가 -> 시공 -> 탱크안전성능검사 -> 소방서 완공검사 |
|---------|--|
| 기술검토 대상 | 기술원 기술검토 -> 허가 -> 시공 -> 탱크안전성능검사 -> 기술원 완공검사 -> 소방서 완공검사 |

대통령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 1. 기초·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2. <u>충수(充水)·수압검사</u>: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 다만, <u>다음 각 목</u> 어느 하나에 해당탱크 <u>제외</u>.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3. <u>용접부검사</u>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u>정기검사</u>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u>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u>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 의 규정에 의한 <u>충수·수압검사</u>로 한다.
- ②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탱크시험합격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26.〉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구 분 | 검 사 내 용 |
|-----------------|---|
| |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
| |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
| | 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1. 기초·지반검사 |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
| (비파괴검사 X) |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 |
| | 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
| | 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っ えん.人のカル |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 |
| 2. 충수·수압검사 | 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 |
| 3. 용접부검사 | 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 | 함 |
| Λ OFHFEH∃ΣΑΥΓ |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 4. 암반탱크검사 |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탱크안전 성능검사 권한자

1. 시도지사

소방서장 : 권한 위임
 기술원 : 업무위탁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술원 위탁 대상

- 1. 용량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 저장 탱크 특정옥외탱크
- 2. 암반탱크
- 3. 지하탱크저장소 위험물 탱크 중 행안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이중벽탱크)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 시기, 대상

| 검사 종류 | 신청시기 | 검사 대상 : 액체 위험물탱크 | 위임, 위탁 |
|---------------|----------------------|--|---------------------------------|
| 기초 · 지반 검사 | 기초, 지반 공사전 | - 옥외탱크저장소 액체 위험물 중 100만리터 이상 | 기술원(100만L 이상) |
| 충수 · 수압 검사 | 배관, 부속 부착전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제외사항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지정수량 미만 탱크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기술원(100만L 이상) 소방서장(100만L 미만) |
| 용접부 검사 | 탱크본체 공사전 | - 옥외탱크저장소 액체 위험물 중 100만리터 이상 - <mark>제외사항</mark> : 옆판과 관련 공사 포함 | 기술원(100만L 이상) |
| 암반탱크 검사 | 탱크본체 공사전 |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 을 이용한 탱크 | 기술원(100만L 이상) |

- ※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
- 1. 설치장소 관할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
- 2. 제작지 관할 소방서장(충수·수압검사에 한하여 가능)

행정안전부령

제12조(기초·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 ① 영 별표 4 제1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중 별표 6 IV 및 V의 규정에 의한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 ② 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라 함은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이하 "특수액체위험물 탱크"라 한다)를 말한다.
- ③ 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정치설비의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④ 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X II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X III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 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초·지반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충수·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 ① 영 별표 4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 1. 10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6 VI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워서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 2. 100만리터 미만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 별표 4 IX 제1호 가목, 별표 6 VI 제1호, 별표 7 I 제1호 마목, 별표 8 I 제6호·Ⅱ 제1호·제4호·제6호·Ⅲ, 별표 9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X제1호 가목, 별표 13 Ⅲ 제3호, 별표 16 I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수압시험 및 그 밖의 탱크의 누설·변형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탱크안전성능시험의 부분에 한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압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 ① 영 별표 4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 1. 특수액체위험물탱크 외의 위험물탱크의 경우 : 별표 6 VI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 2. 지중탱크의 경우 : 별표 6 X II 제2호 마목4)라)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접부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용접부검사를 탱크시험자가 실시하는 용접부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 ① 영 별표 4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방법·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 ① 삭제
- ② 영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탱크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별표 6 VI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u>기술원</u>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 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에 탱크시험성 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u>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시 전!
 - 1. <u>기초·지반검사</u> : 위험물탱크의 <u>기초 및 지반</u>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2. 충수·수압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3. <u>용접부검사</u>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4. <u>암반탱크검사</u> : 암반탱크의 **본체(주변 X)**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⑤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은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탱크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⑥ 영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라 함은 별표 8 Ⅱ의 규정에 의한 이중 벽탱크를 말한다.

제9조 (완공검사)

-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지·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③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u>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u>.
-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 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⑤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령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 ① 법 제9조에 따라 <u>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u>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u>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u>하여 <mark>시·도지사</mark> 또는 <u>소</u> 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mark>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mark>
 - 1. <u>배관에 관한 **내압시험**</u>, <u>비파괴시험</u> 등에 <u>합격</u>하였음을 <u>증명</u>하는 <u>서류</u>(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그 위험물탱크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u>기술원은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u>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u>완공검 사업무대장</u>을 작성하여 <u>10년간</u> 보관하여야 한다.
- ③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2. <u>이동탱크</u>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이하 "<u>상치장소</u>"라 한다)를 <u>확보한 후</u>
- 3. <u>이송취급소</u>의 경우 : <u>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u>. 다만, <u>지하·하천 등에 매설</u>하는 이송배 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나. 배관을 <u>지하에 설치하는 경우</u>에는 <mark>시·도지사</mark>, <mark>소방서장</mark> 또는 <u>기술원</u>이 지정하는 부분을 <u>매몰하기 **직전**</u>
 -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u>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u>의 경우 : 제조소등의 <u>공사를 **완료한 후**</u>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완공검사 업무위탁 가능한 제조소등** 3천제일 50준특 암반
- 1.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취급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2. 옥외탱크저장소 저장용량 50만리터 이상 준특정옥외탱크
- 3. 암반탱크저장소

※ 각종 신고 비교

| 구분 | 품명,수량,배수 변경 | 지위승계 | 용도폐지 | 사용 중지신고, 재개신고 |
|---------|--------------------|--------------------|-----------------|-----------------|
| 신고 기한 | 1일 전까지 | 30일 이내 | 14일 이내 | 14일 전까지 |
| 신고 수리권자 | 시도지사 (서장위임) | 시도지사 (서장위임) | 시도지사 (서장위임) | 시도지사 (서장위임) |
| 신고 대상 | 제조소등 (허가의 면제 X) | 제조소등 (허가의 면제 X) | 제조소등 (모든 대상) | 제조소등 (모든 대상) |
| 신고 의무자 | 변경하고자 하는 자 |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자 | 관계인 | 관계인 |
| 처리기간 | 1일 | 즉시(3근무시간 이내) | 5일 | |
| 수수료 | 없음 | 2만원 | 없음 | |
|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u>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u>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승</u>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u>관계인(소유자·점유자</u> 또는 <u>관리자)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u>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u>14</u>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u>사용을 중지</u>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u>사용을 재개</u>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u>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u>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mark>시·도지사</mark>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안전부령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탱크·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고 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 ① 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1항의 설치·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1조의 가사용승인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영 제7조제1항의 설치·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 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 는 신고서와 구조설비명세표(설치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과징금처분)**

- ① **시·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u>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u>불편</u>을 주거나 그 밖에 <u>공익을 해칠</u>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u>2억원 이하</u>의 <u>과징금</u>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과징금을 부과</u>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u>필요한 사항</u>은 **행정안전부령**(25조~27조)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u>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u>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행안부령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 5.〉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 나.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 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 지의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
-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 이 지정취소(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취소(법 제16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u>용도폐지신고 태만, 허위로 한 경우 (X)</u>

| 위 반 행 위 | | 행정처분기준 | |
|-------------------------------------|-------|--------------|------|
| | | 2차 | 3차 |
|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허가취소 | |
|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정지 | 사용정지 | |
| 정기점검 을 하지 않은 경우 | 10일 | 30일 | 허가취소 |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302 | |
| | 경고 또는 | | |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 사용정지 | 사용정지 사용정지 | |
| | 15일 | | |
| 완공검사 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 | 60일 | 허가취소 |
| 위험물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5일 | | 어기위조 |
|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사용정지 | 허가취소 |
| Mo Hi | 사용정지 | 60일 | |
|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일 | 사용정지 | 허가취소 |
| 구나 제고 그는 이번의 중앙을 위한한 정부 | | 90일 | 이기귀끄 |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 | |
|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 | 7174514 | | |
| 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 지정취소 | | |
|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 | | |
|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 어무거기 | 어무거기 | |
|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없이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따르지 아니한 때 | 30일 | 60일 | |
| 게드크기드립이 그것에 이런 버거 드이 시그로 여기 3현 이사 된기 이 | 경고 또는 | | |
|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 | 업무정지 | | |
| 니한 때 | 30일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 경고 | 90일 | |
|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 |

다.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 |
|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등록취소 | | |
|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등록취소 | | |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 합 제10보세28의 118에 의한 8학기분에 의할에게 된 8학 | | 60일 | 0711- |
|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 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 | 30일 | 90일 | 등록취소 |
| 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 · 관리)

-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u>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u>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 ① <u>제조소등</u>[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거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관계인</u>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mark>대통령령(11조)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mark>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u>안전관리자</u>"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11조)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u>설치한 자</u>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u>대통령령이 정하</u>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u>14일 이내</u>에 **행정안전** 부령(53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u>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u>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u>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u> 또는 <u>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54조)이 정하는 자를 <u>대리자(代理者)</u>로 지정하여 그 <u>직무를 대행</u>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u>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u>.</u>
-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u>동일인</u>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12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u>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u>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13조)이 정하는 <u>제조소등</u>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 허가대상 모두는 선임 대상이 아니다. 저장소는 모두 선임대상이 아니다 제조소등은 모두 선임대상이 아니다 |
|-------------|---|
| 협의를 받은 제조소등 | 군사 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 |

※ **안전관리자** <u>미선임</u> 대상

| 허가 면제대상 | 1. 주택(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 2. 농,축,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 | |
|-----------------|--|--|
| <u>이동탱크</u> 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 설치자 및 관계인

| 설치자 | 법 제6조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
|-----|--------------------------------|
| 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안전관리자)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 1.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모든 위험물 |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그는 기업을 |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제4류 위험물 |
| 3.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이상 | 제4류 위험물 |

※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등

| | -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 - 재선임의 기산일 : 해임·퇴직한 날의 다음날 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되는날까지 신고 |
| 재선임 기한 | -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 는 |
|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사실을 알려 해임이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 HOLU 71-1 |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선임신고 기한 | - 선임신고의 기산일 : 선임한 날의 다음날 을 기산일로 하여 1 4일이 되는날까지 신고 |
| 선임신고 수리권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중 여행, 질병, 해임, 퇴직 등의 일시적인 직무대행자 |
| | - 직무 대행기간 <mark>30일 초과 금지</mark> (3 0일 이하) |
| | - 위험물 기능사 실무경력 <mark>미인정</mark> |
| 대리자 | - 대리자의 자격(보조자와 동일) |
| |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 | 2. 안전교육 받은자 |
| | 3. 안전관리자 지휘, 감독 하는 직위에 있는자 |
| | - 1인의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대상 중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에 두는 업무 보조자 |
| 보조자 | - 업무 보조기간 제한 없음 |
| | - 위험물 기능사 실무경력 인정 |
| 안전관리원 |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두는 대상의 관계인이 두는 업무 보조자 |

대통령령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
| 1.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모든 위험물 | |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 |
| 2.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자 | 제4류 위험물 | |
| 3.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이상 | 제4류 위험물 | |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 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 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 ③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제2항제1호의 경우:「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 2. 제2항제2호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 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위치·거리 | 제조소등 구분 | | 개수 | 인적조건 |
|--------------------------|--------------|------------------|-------------|------|
| 동일구내에 | 보일러 등 일반취급소와 | 그 일반취급소에 | 7개 이하 | |
| 동일구내에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와 | 공급하기 위한 위 | F.711 O.1—1 | |
| (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 이내) |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와 | 헌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 5개 이하 | |
| | 옥외탱크 저장소 | | 30개 이하 | 동일인이 |
| 동일구내에 있거나 | 옥내 저장소 | | | 설치한 |
| 상호보행거리 100m | 옥외 저장소 | | 10개 이하 | 하 경우 |
| | 암반탱크 저장소 | | | |
| 이내의 거리에 있는 | 지하탱크 저장소 | | | |
| 거장소로서 | 옥내탱크 저장소 | | 제한없음 | |
| | 간이탱크 저장소 | | | |

30 옥외탱 / 10 내외 암반 / 옥내탱 지하 간이

대통령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① 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1. 보<u>일러 · 버너</u>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u>7개 이하</u>의 <u>일반취급소</u>와 그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u>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u>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u>5개 이하</u>의 <u>일반취급소</u>[일반취급소간의 거리 (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u>300미터</u>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3. <u>동일구내에 있거나</u> 상호 <u>100미터 이내</u>의 거리에 있는 <u>저장소</u>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56조)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u>3천배 미만</u>일 것. 다만, <u>저장소</u>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1호, 2호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안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② 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 1. 제조소
 - 2. 이송취급소
 -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행안부령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 ①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 3. **옥내탱**크저장소
 - 4. **지하탱**크저장소
 - 5. **간이탱**크저장소
 -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 ②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

대통령령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1.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 제 조 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 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는 위험물기능사 |
|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 |
|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 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 저 장 소 | 2. 옥외탱크저장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 하의 것 | |
| | 3. 옥내탱크저장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 | 4. 지하탱크저장 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 배 이하의 것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 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
|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

| | 설비에 공급하기 | ,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 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 |
|-----|--|---|----------------------------------|----------|
| | 9. 제1호 내지 제 | 위험물기능장, 또는 2년 이상의 는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 실무경력이 있 | |
| | 1. 주유취급소 |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
| |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사, 연 수자 또는 소방공 | |
|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 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
| 취급소 | 석유류·동식물유 (제1석유류·알코 한다)로서 다음 가. 보일러, 버너 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 4. 제4류 위험물면 것 5. 제4류 위험물 |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 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 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나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 |
| | 7. 제1호 내지 제 |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또는 2년 이상의 는 위험물기능사 | |

비고

-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행안부령 제6장 안전관리자 등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① <u>제조소 등의 관계인</u>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u>안전관리자</u>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u>안전관리대행기관</u>을 포함한다)의 <u>선임을 신</u> 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u>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u> 호의 해당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하다)
 -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 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
 -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 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 격자에 한한다)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 2 삭제
-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 마.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4. 화재 등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 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 승인 등을 받은 법인
-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삭제
 -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장비보유명세서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 · 기술인력 및 시설 · 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한다.
- ④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가. 삭제
 - 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 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 3.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7. 1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 |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 |
|------|---|--|--|
| 기술인력 |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 |
| |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 |
| | 3. 分别也可 支 已分配可用 工 6 2 - 1 2 1 2 1 3 6 | | |
| 시 설 |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 | |
| | 1.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 | |
| |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요 이하) | | |
| |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 |
| | 4. 정전기 전위측정기 | | |
| | 5.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도 | | |
| | 구) | | |
| 장 비 | 6. 진동시험기 | | |
| | 7. | | |
| | 8. 표면온도계(-10℃ ~ 300℃) | | |
| | 9. 두께측정기(1.5mm ~ 99.9mm) | | |
| | 10. | | |
| | 11.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 |
| | 12.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 |

비 고 : 기술인력란의 각호에 정한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 승인 등이 취소된 때
 -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 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 6.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②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 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 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여행·질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각종 신고비교

| 구분 | 안전관리자 선임 | 정기점검결과 제출 | 탱크시험자 중요변경 | 대행기관 지정변경 |
|---------|----------------------------------|-------------------|--------------------|------------------------------|
| 신고 기한 | 14일 이내 (재선임기한 : 30일이내) | 30일 이내 | 30일 이내 | 14일이내 지정내용변경 |
| | | | | 14일전에 휴업,폐업,재개업 |
| 신고 수리권자 | 소방본부장, 서장 (고유권한) | 시도지사 (서장위임) | 시도지사 (위임X, 위탁X) | 소방청장 (위임X, 위탁X) |
| 신고 대상 | 제조소등 (이동탱크X, 허가면제X) | 제조소등 (대통령령 대상) | 탱크시험자 | 안전관리대행기관 |
| 신고 의무자 | 관계인 | 관계인 | 변경하고자 하는 자 | 변경하고자 하는자 |
| 처리기간 | 즉시 (3근무시간 이내) | | 등록 15일 변경 3일 | 지정 10일 / 변경 3일 |
| 수수료 | | | 등록 8만원 변경 2만원 | |
|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① 시·도지사 또는 <u>제조소등의 관계인</u>은 <u>안전관리업무</u>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u>수행하기 위하여</u> 탱크안전성능시험 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u>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u>
-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 시설 · 장비를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u>30일 이</u> 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u>다음 각 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탱크시험자</u>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u>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u>
 - 1. 피성년후견인
 - 2. 삭제
 -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탱크시험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 ②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행안부령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삭제 〈2006. 8. 3.〉
 -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5.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행안부령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 ① 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2.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3.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행안부령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 ①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대상별 의무 | 허가대상 | 허가면제대상 | 협의대상 |
|--------------------------------|-------|-----------|-------------|
| 내경될 최구 | ୩୵୮୩୪ | (주택/농축수) | (군용 위험물시설) |
| 저장, 취급, 시설 및 운송기준 | 0 | ○ : 의무 있음 | 0 |
| 품명, 수량, 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 | 0 | X : 의무없음 | 0 |
| 탱크안전성능검사 | 0 | X | 0 |
| 완공검사 | 0 | X | ● 자체실시 |
| 선이감시 | | ^ | 완공검사후 결과 통보 |
| 71014711 117 | | | ● 자체실시 |
| 지위승계 신고 | 0 | X | 완공검사후 결과 통보 |
| 용도폐지신고 | 0 | 0 | 0 |
| 사용중지 또는 재개신고 | 0 | 0 | 0 |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 V | ● 자체실시 |
| (이동탱크 <mark>미선임</mark> -> 운송자) | S자) X | | 완공검사후 결과 통보 |
| | | | ● 자체실시 |
| 예방규정 제정,변경(해당경우) | 0 | 0 | 완공검사후 결과 통보 |
| 정기점검(해당 경우) | 0 | 0 | 0 |
| 정기점검 점검결과 제출 | 0 | 0 | 0 |
| 자체소방대 설치(해당 경우) | 0 | 0 | 0 |

※ 위험물 취급자격자

| 안전관리자 (제조소등 마다) | 대리자 (30일 이하의 일시적) | 대리자 = 보조자 (중복선임대상중) (제조소, 이송·일반 취급소) | 안전관리원 (대행기관 보조) | |
|---------------------------|----------------------|--|---------------------------|--|
| 국가기술자격자 모든 위험물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자 | |
| 안전교육 이수자 4류 | 안전교육 받은자 | | | |
|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 | | | |
| 4류 | | | | |
| | 안전관리자를 | 안전관리자를 | | |
| | 지휘, 감독직위에 있는 자 | 지휘, 감독직위에 있는 자 | | |
| 선임신고 14일 이내 재선임 30일 이내 | 지정신고 X | 지정신고 X 대리자 실무경력 미인정 보조자 실무경력 인정 | 지정신고 X | |

※ 위험물 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 운송책임자 |
|------------------|----------------------------|
| (이동탱크 직접 운전하는 자) | (알킬알루미늄 등 운송의 감독 및 지원하는 자) |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자 + 1년 이상 경력 |
| 안전교육 받은자 | 안전교육 받은자 + 2년 이상 경력 |

※ 2년이상 실무경력있는 위험물기능사

| 4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 | 지정수량 무관 |
|------------------|---------------------|
| 암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무관 |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무관 |
| 상기 대상 외의 것(4류 등) | 제조소등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이함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 자격 |
|--------|--|-------------------------------|
| 제 | 1.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이하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 기 조 | 1. 제4ㅠ 위험물인 위법이는 것으로 사용구경 5페이이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소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 1 | 2. 제1호에 해당하지 어디어는 것 | 위험물기능사 2년 이상 |
| 시 | | |
| 하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 |
| 탱 | | 이천무기노가 이천무사어기기 이천무기노기 |
| 크 |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 저 |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외 나머지 250배 이하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장 | 1석유류,알코올,2석유,3석유,4석유,동식물 | |
| 소 | | |
| | 의 (특수인화물만 취급 40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 | - (국구근되글근 컵 40에 시어) | 위험물기능사 2년 이상 |

※ 안전관리대행 VS 탱크시험자

| 구분 | 권한자 | 수수료 | 변경신고 (민원인 의무) | 처리기간 (공무원 의무) | 비고 |
|--------------------|---------------------------------|------------------------|---|---|---|
|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 소방청장 (위임 X) (위탁 X) | X | 지정변경 -> 14일 이내(사후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 -> 14일 전에(사전신고) | 지정 : 10일 이내 변경 : 3일 이내 | 기술인력 4명 정기점검 가능 특정,준특정 옥외탱크 불가 행정처분 : 경고,정지,취소 신고위반 : 과태료 X |
| 탱크 시험자 등록 | 시도지사 (위임 X) (위탁 X) | 등록 8만원 변경 2만원 | 중요사항 변경 -> 30일 이내(사후신고) | 등록 : 15일 이내 변경 : 3일 이내 | 기술인력 2명 ~ 4명 정기점검 가능 특정,준특정 옥외탱크 가능 행정처분 : 정지,취소 신고위반 : 과태료 O |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 1. 안전관리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 L.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승인 등을 받은 법인
- 2.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ㄱ.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ㄴ.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ㄷ. 장비보유명세서

※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탱크시험자 기술능력 시설 장비 비교

| 구분 | 안전관리대행기관 [시행규칙 별표22] | 탱크시험자 [시행령 별표7] |
|--------------|--|---|
| 기술인력 기술능력 |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1인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인이상 3. 기계,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기술인력란 각호에 정한 2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검할 수 없다 | ※ 필수인력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이상 또는 초음파비파 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 비파괴검사 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필요한 경우 두는 경우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 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수직・수평도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사 -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 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 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 괴검사 기능사 |
| 시설 |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 전용사무실 |
| 장비 | 1. 절연저항계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음 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농도 측정이 가능할 것) 4. 정전기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 6. 전동시험기 8. 표면온도계(-10~300도) 9. 두께측정기(1.5 ~ 99.9mm) 11. 안전용구(안전모,안전화,손전등,안전로프) 12. 소화설비점검기구 (소화경보 피난 X)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 다음의 어느하나 1. 영상초음파시험기(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X)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 필요한 경우 두는 경우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고. 진공능력 53kPa 이상 진공누설시험기 L. 기밀시험장치 - 안전장치 부착된 200KPa 이상 - 감압능력 10KPa 이상 감도 10Pa 이하 - 각각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것 |
| 비고 | | |

※ 안전관리자 선임, 대리자지정, 신고 등의 위반 벌칙

- 1. **안전관리자 선임 / 대리자 지정**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자
 - 허가 :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대리자 미지정과 동일형량)
- 2.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실무: 책무위반, 업무태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대리자 지정 **신고 의무 없음**
 - 과태료 벌칙 없음(죄형법정주의)
- ※ 안전관리대행기관
- 1. 지정기준

기술인력, 시설, 장비 : 시행규칙 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 2. 지정대상
 - 이 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관리업무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승인 등을 받은 법인

3. 지정권자

소방청장 - 위임X, 위탁X

4. 변경 신고

지정내용 변경: 14일 이내 사후신고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14일 전에 사전신고

5. 지정의 취소사유

지정취소 : 7총 -> 행정처분 1차 사유(3종)와 행정처분 3차 사유(4종)

6.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안전관리자 지정

소속된 기술인력 : 영에 적합한 기술인력

일시적 사유 직무대리 :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안전관리자 중복 지정의 제한 수

25개 초과 금지(25개 이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원을 지정 업무 보조(제외 : 20배 이하 저장소)

8. 기술인력이 위험물 취급작업에 미참여 할 경우 점검 및 감독

매월 4회 이상

저장소는 매월 2회 이상

- ※ 행정처분 기준
- 1.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
 - 그 중 중한처분 기준으로 함
 -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거나 업무정지인 경우 중한처분의 2분의1까지 가중처분
- 2. 처분기간 중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
-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 3.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적용
 - 기준적용일 : 최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날** 기준
- 4.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다시**한다
- 5. 행정처분기준의 경감 요건
 -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경감
 -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1기간까지 경감

제17조 **(예방규정)**

- ① **대통령령**(15조)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u>관계인</u>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령**(63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예방규정</u>을 정하여 해당 <u>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u>에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u>예방규정</u>이 제5조제3항에 따른 <u>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u> 화재예방이나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u>관계인과 그 종업원</u>은 <u>예방규정</u>을 충분히 잘 익히고 <u>준수</u>하여야 한다.
 - ->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기준은 없다
-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제조소등</u>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예방규정의 이행 실태</u>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대통령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5. **암반탱크**저장소
- 6. **이송**취급소

다만, <u>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u>한다)만을 지정수량의 <u>50배 이하</u>로 취급하는 <u>일반취급소(제1석유류·</u>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u>10배 이하</u>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행안부령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6.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 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예방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③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 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① **대통령령**(16조)이 정하는 <u>제조소등의 관계인</u>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64조~69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u>기술기준에 적합한지</u>의 여부를 <u>정기적으로 점검</u>하고 점검결과를 <u>기록</u>하여 <u>보존하여</u>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17조)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70조~72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

-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예방규정 제조소등
- 2. 지하탱크저장소
- 3. 이동탱크저장소
-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 **제3항**에서 "<mark>대통령령</mark>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u>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u>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령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u>제조소등의 **관계인**</u>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해 <u>연 1회 이상 정기점검</u>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구조안전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 (이하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u>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u>
-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3. 제2항에 따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u>받은 <u>날부터 13년</u>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로 한다.
 - 1.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유리입자(글래스플레이크)코팅 또는 유리섬 유강화플라스틱 라이닝(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약품재 등을 대는 일)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
 - 나.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annular plate)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 다.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 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 마. 구조물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가라앉는 현상(이하 "부등침하"라 한다)이 없도록 하는 조치
 - 바.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 사.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 2.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부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물 등의 성분의 적절한 관리
 - 나.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현저한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다. 부식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저장조건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부식율(애뉼러 판 및 밑판이 부식에 의하여 감소한 값을 판의 경과연수로 나누어 얻은 값)이 연간 0.05밀리미터 이하일 것
 - 마.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 바.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 사.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 아.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 자.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 차.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u>정기점검의 내용·</u> 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준특정</u>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u>제외</u>한다) 또는 <u>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u>. 이 경우 해당 제조소등의 <u>안전</u>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참관해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1. 5.〉

<u>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u> 관련)

1. 기술능력

- 가. 필수인력
 -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 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 사
 -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 2. 시설: 전용사무실
- 3. 장비
 - 가. <u>필수장비</u>: <u>자기탐상시험기</u>, <u>초음파두께측정기</u>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 1) 영상초음파시험기
 -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나) <u>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u>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유지)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 3. 점검연월일
 -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상탱크의 <u>구조안전점검</u>에 관한 기록 : <u>25년</u>(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 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를 개선한 후 다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결과서에 개선하게 한 사항(탱크시험자가 직접 보수한 경우에는 그 보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탱크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기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제6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 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u>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u>
 -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 ② 삭제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u>함께 받을 수</u>있다.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 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 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 2.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 ②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 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합격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직도 · 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 라. 구조 · 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 ⑤ 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 ⑥ 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 ① 정기검사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②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밀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 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 1. <u>제4류</u> 위험물을 취급하는 <u>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u>에서 위험물의 <u>최대수량의 합</u>이 지정수량의 <u>3천배 이상</u> ※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u>일반취급소</u> 등 행정안전부령(73조)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 2. <u>제4류</u> 위험물을 저장하는 <u>옥외탱크저장소</u>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u>최대수량</u>이 지정수량의 <u>50만배 이상</u>
-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u>별표 8</u>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u>화학소</u> 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행안부령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u>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u>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 ① 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② <u>포수용액</u>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차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u>3분의 2 이상</u> 으로 하여야 한다. <u>3분의 1 X</u>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7. 14.〉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
| 1. 지정수량의 <u>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u> 인 사업소 | 1대 포수용액차(2/3) 1대 | 5인 |
| 2.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2대 포수용액차(2/3) 2대 | 10인 |
| 3.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3대 포수용액차(2/3) 2대 | 15인 |
| 4.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4대 포수용액차(2/3) 3대 | 20인 |
| 5. 옥외탱크저장소 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이 지정수량의 <u>50만배 이상</u> 인 사업소 | 2대 포수용액차(2/3) 2대 | 10인 |

※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

| 화학소방자동차의 구 분 | 방사능력 | 기정수량 | 비치하는 곳 |
|---------------------------------|--------------|--------------------|--------------------------|
| 포 수 용 액 방 사 차 (화학소방차의 2/3이상) | 2000L/min 이상 | 10만L 이상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 비치할 것 |
| 분 말 방 사 차 | 35kg/s 이상 | 1400kg 이상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 40kg/s 이상 | 1000kg 이상 | 할로겐화합물탱크 · 가압용가스설비 비치할 것 |
| 이산화탄소 방사차 | 40kg/s 이상 | 3000kg 이상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 제 독 차 | 가성소다 및 구 | 구조토 50kg 이상 | |
| | | | |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20조(위험물의 운반)

-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 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은 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 ③ 시·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험물의 운송)

-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 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u>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u>

제22조(출입·검사 등)

-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u> 또는 <u>이동탱크저장소</u>를 정지시켜 해당 <u>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u>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u>국가기술자격증</u> 또는 <u>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u>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u>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u>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출입·검사</u> 등은 그 장소의 <u>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u> 또는 <u>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u>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u>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u> 또는 <u>화재</u>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u>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u>자료제출을</u> 명하거나 <u>관계공무원으로</u>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u>출입</u>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u>출입·검사</u> 등을 하는 <u>관계공무원</u>은 그 <u>권한을 표시하는 증표</u>를 지니고 관계 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u> 등의 <u>사고가 발생</u>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u>사고조사위원회를</u>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9조의2)으로 정한다.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u>고 인정하는 때에는 <u>감독상 필요한 명령</u>을 할 수 있다.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u>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u>등 필요한 <u>조치를 명할 수 있다</u>.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u>긴급한 필요</u>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u>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u>하거나 그 <u>사용을 제한</u>할 것을 <u>명</u>할 수 있다.

제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제조소등</u>에서의 <u>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u>이 제5조제3항의 <u>규정에 위반</u>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u>관계인</u>에 대하여 동항의 <u>기준</u>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u>명할</u>수 있다.
-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u>이동탱크저장소</u>에서의 <u>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u>이 제5조제3항의 <u>규정에 위반</u>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u>명할 수 있다</u>.
- ③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u>허가를 한 시·도지사</u>,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히 그 *최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 ① 제조소등의 <u>관계인</u>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u>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u>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u>응급조치를 강구</u>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u>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u>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 (안전교육)

-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렁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u>교육대</u> 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안전원 위탁)
-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기술원 위탁)
-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안전원 위탁)
-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안전원 위탁)

행안부령

제78조(안전교육)

-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 기가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 ③ <u>기술원</u>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u>안전원</u>"이라 한다)은 <u>매년</u>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u>전년도 말까지</u>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u>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u>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u>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u>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 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1. 6. 10.〉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제78조제2항관련)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시기 | 교육기관 |
|------|-------------------------|-------------|-----------|------|
| |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24시간 | 최초 선임되기 전 | 안전원 |
| 강습교육 | 위험물 <u>운반자</u> 가 되려는 사람 | 8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
| | 위험물 <u>운송자</u> 가 되려는 사람 | <u>16시간</u>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

| | 안전관리자 | 8시간 |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안전원 |
|------|------------------------|-----------|--|------------|
| | | 이내 |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u>2년마다 1회</u> | |
| 실무교육 | 위험물 <u>운반자</u> | 4시간 | 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u>3년마다 1회</u> | 안전원 |
| | 위험물 <u>운송자</u> | 8시간 이내 | | 안전원 |
| | <u>탱크시험자</u> 의 기술인력 | 8시간 이내 |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u>2년마다 1회</u> | <u>기술원</u> |

비고

- 1.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u>공통과목</u>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u>강습교육 과정에서</u>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u>운송자</u>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u>4시간 이내</u>)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u>실시할 수 있다.</u>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 가. **안전원의 원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u>매년 1월 5일까지</u>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 나. <u>기술원 또는 안전원</u>은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u>교육실시 10일 전까지</u>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이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 타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시간·실습 및 평가,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 육 과 정 | 교 육 내 용 | | |
|----------------|---|------------------------------------|--|
| 안전관리자 |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 | |
| 강습교육 | 및 소화의 방법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
|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 ·위험물운반에 관한 안전기준 |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
|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작동법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 |

제29조(청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21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22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 ○고유권한 ⟨⟩ 위임 위탁 |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시도지사 | 소방청장 | 기술원 | 안전원 |
|---|------|-------|-------|------|-----|-----|
| 동일 시도 2이상 소방서장 | | | 0 | | | |
| 이송취급소 허가 등 권한 | | | 위임 제외 | | | |
| 1. 설치 및 변경 허가 | 위임 | | 0 | | | |
| 2. 품명 등의 변경신고 수리 | 위임 | | 0 | | | |
| 3.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 위임 | | 0 | | | |
| 4. 탱크안전성능검사 | 위임 | | 0 | | 위탁 | |
| 5. 완공검사 | 위임 | | 0 | | 위탁 | |
| 6. 지위승계신고 수리 | 위임 | | 0 | | | |
| 7. 용도폐지신고 수리 | 위임 | | 0 | | | |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 미개정 | | 0 | | | |
| 8. 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 위임 | | 0 | | | |
| 9. 과징금처분 | 0101 | | _ | | | |
| 2억원 이하 : 사용정지처분 갈음 | 위임 | | 0 | | | |
| 10. 예방규정의 수리, 반려, 변경 | 위임 | | 0 | | | |
| 11. 정기점검 점검결과 제출 | 미개정 | | 0 | | | |
| 정기검사(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 0 | 0 | | | 위탁 | |
| 용기검사(시험9종 : 소형4, 대형9) | | | 0 | | 위탁 | |
| 안전교육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실무교육) | | | | 0 | 위탁 | |
| 안전교육 (안전관리자,운반자,운송자 등) | | | | 0 | | 위탁 |
| 공사장 등 임시 승인신청 수리 | 0 | | | | | |
| 구조안전점검 연장신청 수리 | | | | | | |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0 | | | | | |
| 안전교육(안전원) 지도 감독 | | 0 | | | | |
|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 | | | 0 | | | |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변경 | | | | 0 | | |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도 감독 | | | | 0 | | |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 0 | 0 | | | | |
| 안전교육 미필자 행위제한 | 0 | 0 | 0 | | | |
|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 | 0 | 0 | 0 | | | |
| 청문(허가취소, 등록취소) | 0 | 0 | 0 | | | |
| 과태료 부과 징수 | 0 | 0 | 0 | | | |
| 법 제 5장 감독 및 조치명령권 조치(명령)권자별 고유권한(<->위임 및 위탁 없음) | | | | | | |

대통령령

제21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둘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 · 반려 및 변경명령
-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제22조(업무의 위탁)

- ①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 1.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기술원에 위탁한다.</u>
 - 1. 탱크안전성능검사
 -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나. 암반탱크
 -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18조)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완공검사**

- 가. 지정수량의 <u>3천배 이상</u>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나. <u>옥외탱크저장소</u>(저장용량이 <u>50만 리터 이상</u>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u>암반탱크저장소</u>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취급의 승인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 9.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 10.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행안부령 제79조(수수료 등)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2016. 1. 27., 2017. 12. 26.〉

-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제7장 벌칙

제33조(벌칙)

| (고의로)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u>허가를 받지 않고</u>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 | | | |
|--|--|--|--|--|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 을 발생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양벌규정 :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 사람을 상해(傷害) 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양벌규정 : 1억원 이하 벌금 | | | |
| 사람을 사망 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양벌규정 : 1억원 이하 벌금 | | | |

제34조(벌칙)

|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 | | | |
|--|--|--|--|--|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 을 발생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7천만원 이하 벌금 | | | |
|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1억원 이하 벌금 | | | |

제34조의2, 24조의3(벌칙)

|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mark>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mark> 제조소등을 <mark>설치</mark>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위반 ->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mark>제조소등이 아닌 장소</mark> 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5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4.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제6호, 제36조제6호·제7호·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6.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7. 제20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 8.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제36조(벌칙)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5.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 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8조(양벌규정)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 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 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 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14. 12. 30.〉
- ④ 삭제 〈2014. 12. 30.〉
- ⑤ 삭제 〈2014. 12. 30.〉
- ⑥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u>과태료</u>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 · 징수한다.
- ⑦ 삭제 〈2014. 12. 30.〉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 구분 | 행정처분 : 취소, 사용·업무정지 | 과태료부과처분 | |
|---------------|--------------------------|------------------------|--|
| 위반 횟수(차수)에 따른 | 키그 기념가 가요 이HL해이 | 키그 11보기 가이 이번째이 | |
| 처분의 기준기간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 |
| コスコスO ストスラ |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 | |
| 기준기간의 산정 | 위를 한날 | 반행위 를 적발한 날 | |
| 2 이상 위반의 가중 | 처분 상이 : 중한 처분 | | |
| | 처분 동일 : 2분의1까지 가중 | | |
| 감경(경감) | 2분의 1기간까지 경감 | 2분의 1까지 감경 | |
| | -> 사용·업무 정지 에 한함 | | |

※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행정형벌의 종류: 「3종」 징역, 금고, 벌금

1. 징역 : 무기(종신형)와 유기(2종) 2종으로 나눈다.

2. 금고 : 무기와 유기 2종으로 나눈다. 노역을 하지 않는다

3. 벌금 : 5만원 이상, 감경시 5만원 미만